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우-06703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35 버스회관 3층 / 전화 (02) 585-4578/ 전송 (02) 585-4524
기 획 부 기획이사 김 순 경 부 장 강 세 웅 과 장 남 무 락

문서번호 버스연제115호

시행일자 2022. 5. 16.

수 신 수신참조

참 조

선결			지시		
접수	일자	2022. . .	결재·공람		
	시간	: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 목 노선버스 유가연동보조금 기준가격 인하 건의

1. 코로나19와 관련한 비상시국에 국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부에 감사드리며, ’22.5.1부터 노선버스에 지급되고 있는 유가연동보조금과 관련입니다.

2. 노선버스는 국민의 생활교통수단으로서 현재 전국 530여개 업체에서 10만여 명의 종사자가 4만 5천여 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 이전 대비** ’20.2월부터 ’22.4월까지 **약 5조 3천억원의 매출액 감소가 발생**(시내·농어촌버스 2조 7,118억 원, 시외버스 1조 7,958억 원, 고속버스 8,055억 원)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노선버스업계 경영난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매출액 감소 현황(’20.2월1주～’22.4월4주까지, 812일간)**〉

구분	수송인원(만명)				매출액(억원)			
	이전	이후	증감	**증감률**	이전	이후	증감	**증감률**
시외	32,965	14,976	-17,988	**-54.6%**	31,188	13,230	-17,958	**-57.6%**
고속	9,480	4,795	-4,685	**-49.4%**	16,111	8,055	-8,055	**-50.0%**
시내·농어촌	1,140,369	822,199	-318,170	**-27.9%**	108,304	81,186	-27,118	**-25.0%**
합계	1,182,814	841,970	-340,843	**-28.8%**	155,603	102,471	-53,132	**-34.1%**

* 시외·고속버스 전산망 및 각 시·도 교통카드이용실적 분석자료

3.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계속되고 있는 유류비 급등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단행하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노선버스는 유류세 인하액만큼 유가보조금이 인하되었고, 유가연동보조금은 기준가격(1,850원/ℓ) 이상 금액의 50%만 지급되고 있어, 노선버스는 유류비 부담 완화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유가인상에 따른 충격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선버스 유류비 부담 증가 내역(경유 원/ℓ, CNG 원/㎥)〉

구 분		'20.12월	'21.12월	'22.5월1주	증감 ('20.12대비)	증감률	비고
경유	평균가격	1,168.32	1,468.90	1,906.42	738.10	63.1%	한국석유공사자료
	유가보조금	380.09	263.76	234.59	-	-	유가연동보조포함
	실부담가격	788.23	1,205.14	1,671.83	883.60	112.1%	-

* '22.5월1주 유가보조금은 유류세보조 206.38원/ℓ + 유가연동보조 28.21원/ℓ으로 구성, 유가연동보조('22.5.1부터 시행)는 기준가격(1,850원/ℓ) 이상액의 50% 보조

4. 노선버스업계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은 전국적 규모의 버스파업에 따른 파행운행을 방지하고자 2년만에 5%의 임금인상이 불가피하였고, 또한 최근 계속되고 있는 급격한 유류비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로 최악의 경영난에 놓여있어, 정상적인 운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5. 이에 정부의 유류비 부담 완화조치가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버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을 대폭 하향 조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니 적극 검토 및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 장 김 기 성

수신 : 국토교통부장관(버스정책과장), 기획재정부장관(환경에너지세제과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석유산업과장)